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18798(본소), 2023나18804(반소) 판결  
[청구이의 · 보증채무금]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18798(본소), 2023나18804(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5279248 판결

##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문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4. 16.

판결선고 2024. 5.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5279248(본소), 2022  
가단5346056(반소) 판결

##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2806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행의 “2016. 3. 27.”을 “2017. 3. 27.”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1990년경 발생한 보증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의도적으로 채권자와의 접촉을 차단시켜 채무 독촉을 회피하였고, 채권자표상 피고의 보증채무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원고가 얻을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1993년경 발생한 친구 E 관련 채무와 1994년경 발생한 동생 F 관련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것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누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혈족 및 친구의 채무이므로 단순 지인과 관련한 이 사건 채권에 비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D과 보증인이었던 원고가 금전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일반적인 금전대차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상 경위가 특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1차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서면을 제출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6년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추심위임계약을 한 G(주)를 통해 이 사건 회생절차 전인 2016. 3. 4.와 2016. 3. 31. 원고의 주민등록지에 채무변제 촉구문과 법적 절차 진행의뢰 예정 통보서를 각각 발송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지 못한 것이 원고 측의 과실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독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문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밝혀진 부채 총계는 996,843,114원인데 비해, 이 사건 채권액은 91,000,000원으로 약 11%의 금액에 불과하였으며, 30개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량의 채무 중 이 사건

채권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2017. 5. 29. 이후에는 더 이상 회생채권의 추완신고가 허용되지 않아 피고가 추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3.경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조휴옥, 판사 성지호